

# 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93,957,501	11,818,725
일반회계	377,063,240	11,311,897
특별회계	16,894,261	506,828
기타특별회계	16,894,261	506,82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83,352	11,50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1,297	639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8,735,472	262,064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30,000	3,900
주차장특별회계	7,624,140	228,72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505,01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   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→지      기금→기      시비→시      특별교부세→특세  
특별교부금→특금